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21
----------	-------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 의 자 : 최혁진 · 최민희 · 이수진
허성무 · 김 윤 · 이건태
박민규 · 양문석 · 이성운
정혜경 · 전종덕 · 김재원
위성곤 · 이해민 · 김종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에 대한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가족지원서비스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규칙 및 여성가족부의 고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획일적인 소득·재산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음. 이로 인해 소득·재산 기준은 초과하지만 고용불안, 자녀돌봄 공백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모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하되 소득·재산, 취업·고용, 양육·돌봄 등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원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5 및 제5조의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차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를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도, 취업·고용 상황, 양육·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현황 등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의5제4항 중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를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7(국회 보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확정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차등 지원) ① ----- ----- -----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정도, 취업·고용 상황, 양육·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현황 등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5조의7(국회 보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확정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	---